긴급입찰사유서

❑ 사업명 : 국립법무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

❑ 관련규정 : 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35조

> **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**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>
>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>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>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>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>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❑ 긴급입찰 사유

○ 본 사업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진행 중인「국립법무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」사업의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임

○ 「국립법무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」사업의 요구조건 정의단계의 상주 감리 진행, 감리사업 지연으로 인한 구축사업 진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이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제4호에 따른 공고기간 단축이 필요함

○ 또한 동법 제35조제4항1의2호에 해당하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조속히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입찰로 발주 요청함

국립법무병원장 (인)